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장

제17호 2016. 4. 15(금)

훈 령

- 남원시 훈령 제 358 호 남원시 공무원외여행 규정 전부 개정규정안 1

고 시

- 남원시 고시 제 2016-54 호 개간사업시행계획 승인 고시 15
- 남원시 고시 제 2016-55 호 남원시 군도(4호선, 10호선 및 13호선)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6
- 남원시 고시 제 2016-58 호 남원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30
- 남원시 고시 제 2016-59 호 개간사업시행계획 승인 고시 32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 2016-505 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공고..... 33
- 남원시 공고 제 2016-522 호 풍산누리안아파트 신축공사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확정시행 공고..... 39
- 남원시 공고 제 2016-539 호 남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공고... 41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6년 4월 15일

남원시 훈령 제 358 호

남원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남원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원시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남원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및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이하 “공무국외여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외국도시에 해외 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
- 2.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해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 3.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사전협의)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허가신청 전 국외여행 주관부서장(이하

“허가부서장”이라 한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국외여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도 미리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허가신청) 공무원국외여행을 하려는 공무원은 소속 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출국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서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고 허가부서장에게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1. 공무원국외여행 허가 신청서
2. 공무원국외여행계획서
3. 항공운임지급신청서 및 증명서류
4. 해외여행자 수칙
5. 서약서

제5조(허가) ① 제2조에 따라 남원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재난·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 급변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국외여행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남원시 공무원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남원시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공무원국외여행에 대하여 타당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된다. 위원은 안전경제건설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본인이 공무원국외여행자인 경우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자원봉사교류담당
당이 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무국외여행 신청이 있을 때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율적 이라고 판단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 1. 관련 부서 자체계획에 따라 결정된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 2.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쳐 여행자를 선정하는 “공무원 글로벌 정책연수”

제10조(기능) 위원회는 공무국외여행 허가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
정여부를 심사한다.

- 1. 여행목적의 필요성
- 2. 여행목적지의 타당성
- 3. 여행자의 적합성
- 4. 여행기간 및 시기의 타당성
- 5. 여행경비의 적정성
- 6. 초청 경위 및 관련 부처와의 사전 협의, 그 밖의 사항 등

제11조(심사절차) ① 간사는 신청된 공무국외여행 계획서가 관계규정에 위배됨
이 없는지를 검토한 다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심사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안을 심사한 후, 공무국외여행의 적정여부를 심의·의결하고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결정하고 가·부를 서명해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 등) ① 위원장은 심사에 참고가 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심사기준)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의 필요성과 목적 심사

가. 단순한 시찰, 자료수집, 업무협의 등 불요불급의 여행은 제한

나. 세미나, 심포지엄 등 각종 회의에 공식 초청되어 참가하는 경우에도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외여행을 제한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심사

가. 여행목적 달성에 적합한 국가 방문 여부

나. 당초 목적 외 부수적 또는 불요불급한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 이상의 방문국 추가 여부

다. 여행지의 정부 지정 여행제한국가 포함 여부

라. 방문국가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

마. 공무국외여행 중 비상연락체계 수립 여부

바. 현지 활동 교통수단(항공, 철도, 승용차, 버스 등) 확보 여부

3. 여행자와 여행인원의 적합성 심사

가. 현재의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하고 귀국 후 상당 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

나. 여행인원은 해당 임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

다. 동일 목적의 여행인원이 2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인별 수행업무분장이
철저해야 함

4.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심사

가. 여행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함

나. 여행 시기는 여행목적에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국의 관례 및
공휴일 등 현지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

5. 여행경비의 적정성 심사

가. 여행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출 지급

나.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행자의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제한함. 다만,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여행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항공료, 체제비 등의 과다여
부를 심사할 수 있다.

다. 자비로 하는 국외여행은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
정하지 않음

제14조(소양교육) 소속 부서의 장은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공무원이 해외여행
시 공직자로서 품위를 지키고 현지의 규범, 관습, 공중도덕을 존중하며, 방문약
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업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과소비 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출국 전에 소양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해외여행자수칙 준수 등) ① 공무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1-
1호 서식에 따른 해외여행자 수칙 및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약사항을 준
수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출국 전에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연락유지)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여행기간 중 소속 부서의 장과의 연락을 유지하고, 국외여행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여행목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소속 부서의 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7조(귀국보고) ① 공무국외여행자가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새울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귀국보고서 제출대상에서 제외 한다

1.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관련 여행 실시자

② 허가부서장은 공무국외여행자가 귀국보고서 및 수집한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 국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공무국외여행을 마친 사람은 대북관계·통상관계 등 국가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허가부서를 거쳐 중앙부처에 보고 하도록 하고, 특히 외교업무는 외교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사후관리) 시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친 사람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9조(항공마일리지) ① 공무국외여행 대상자는 출발 전 이용 항공사에 회원가

입을 하여 항공마일리지 적립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는 여행자 본인이 추후 공무국외여행 시 우선 활용하도록 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남원시 공무국외심사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별지1호서식]

공무국외여행계획서

1. 여행개요

여행목적							
여행기간	20 . . ~ 20 . . . (일간)						
여행국							
방문기관							
여행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계						

2. 여행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2명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여행경비

성 명	계	항 운 공 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 준비금

여행일수에 관계없이 특정항목 4종에 대해 실비 지급

※ 지급대상 항목 : ①예방접종, ②비자발급, ③여행자보험 가입, ④풍토병예방약 구입

↳ 여권발급은 지급대상이 아님

4. 여행효과

【별지 제1-1호 서식】

해 외 여 행 자 수 칙

1.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여행목적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후 복명서·귀국보고서 등의 제반보고서를 소정의 기일내에 제출한다.
3. 여행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여행을 삼가 여행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4. 여행중의 휴대품은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치 아니한다.
5.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값가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은 귀국후 지체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한다.
6. 명량한 해외여행 분위기를 조성을 위하여 귀국후 어떠한 형태의 여행선물도 공여하지 아니한다.

직급 :

성명 : (인)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여행보고서 표준서식

I.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여행자 인적사항

II.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III.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IV. 붙임자료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 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 보험 증명서 사본

※ 승차권 등 붙임자료는 가급적 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 접사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하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제4호 서식】

공무국외여행심사 요구서

대 상 자 조 서	대 상 자	
	여행기간	
	여 행 국	
	여행목적	
	여행경비	
	주관부서	
참 고 사 항		
요구자 의견		

붙임사항 :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등

위와 같이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요구합니다.

심사요구자 직 위 :
성 명 :

남원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공무국외여행심사 의결서

- 심의일시 :
- 심의장소 :
- 심의위원 : 명
 - 참석위원 : 명
 - 불참위원 : 명

■ 심의결과

의안 번호	심 의 안	심의결과	비고

○ 심의안전

수 용 여 부	심 의 위 원	심 의 의 견		비고
		가	부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 심의위원

직 위	성 명	서 명	비고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남원시 고시 제2016 - 54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6년 04월 12일

남 원 시 장

- 1. 사 업 명 : 개간사업
- 2. 사업목적 :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소득증대 기여
- 3. 사 업 비 : 자력사업
- 4. 사업내용
 - 가. 위 치 : 남원시 식정동 산76번지
 - 나. 사 업 량 : 4,950m²
 - 다. 사업기간 : 2016. 04. ~ 2017. 03. 31
 - 라. 사업시행자 : 경기도 고양시 화중로 ***, **동 ****호, 서 * *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농정과 농촌개발(620-639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고시 제2016 - 55호

남원시 군도(4호선, 10호선 및 13호선)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남원시 군도(4호선, 10호선 및 13호선)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5일

남 원 시 장 인

1.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 치	면 적 (㎡)	기 점	종 점	주 요 통과지	총연장 (km)
기정 변경	군도	4	귀석~장국	남원시 송동면 일원	52,977	송동면 신평리 412-1도	송동면 장국리 1107-13구	-	3.11
					99,421	송동면 신평리 412-1도	송동면 장국리 490-3도		
신설	군도	10	월평~오신	남원시 사매면 일원	3,309	사매면 월평리 764-1도	사매면 월평리 765-3도	-	0.2
신설	군도	13	호곡~신계	남원시 송동면 일원	21,448	송동면 신평리 166-5도	송동면 신평리 2130구	-	1.12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사업시행 예정인 군도4호선에 대하여 도로구역 결정
- 사업이 완료된 군도 10호선, 군도 13호선에 대하여 도로구역 결정

3. 사업시행기간 : 2013년 ~ 2018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 첨”

- 5. 도로구역 결정(안)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계재생략”
- 6.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등), 토지 및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 도로구역 결정 조서 등의 열람기간 및 장소
 - 가. 열람기간 : 고시일 ~ 2016. 4. 29
 - 나. 열람장소 : 남원시청 건설과(☎063-620-6532)
- 7. 도로구역 결정 조서 : “계재 생략”
- 8. 도로구역 결정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계재 생략”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토지조서

1. 도로구역 토지조서

□ 4호선 총괄표

구분	계		국유지		남원시		진라북도		사유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합계	314	99,421.0	62	27,676.9	228	63,229.4	1	6,096.0	23	2,418.7
구	20	5,460.8	20	5,460.8	-	-	-	-	-	-
답	35	16,282.4	2	111.3	25	15,330.7	-	-	8	840.4
대	1	249.0	-	-	1	249.0	-	-	-	-
도	227	56,450.0	31	13,805.9	187	42,135.7	-	-	9	508.4
유	1	10.0	1	10.0	-	-	-	-	-	-
임	3	797.9	-	-	2	777.0	-	-	1	20.9
잡	5	9,007.0	-	-	3	2,088.0	1	6,096.0	1	823.0
전	12	2,832.0	-	-	10	2,649.0	-	-	2	183.0
제	6	7,933.6	6	7,933.6	-	-	-	-	-	-
천	4	398.3	2	355.3	-	-	-	-	2	43.0

□ 4호선 세부토지조서

연번	지역	지번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1	송동면신평리	1644-2도	30.0	30.0	국유지(국토교통부)	-
2	송동면신평리	1644-4도	91.0	84.0	국유지(국토교통부)	-
3	송동면신평리	1644도	275.0	258.0	국유지(국토교통부)	-
4	송동면신평리	1645-641제	924.0	324.0	국유지(국토교통부)	-
5	송동면신평리	1645-822도	255.0	165.0	국유지(국토교통부)	-
6	송동면신평리	1651-2구	37.0	23.2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
7	송동면신평리	1651-6도	53.0	53.0	국유지(국토교통부)	-
8	송동면신평리	1658-1도	41.0	41.0	국유지(국토교통부)	-
9	송동면신평리	1658도	185.0	88.6	국유지(국토교통부)	-
10	송동면신평리	1686도	21.0	21.0	국유지(국토교통부)	-
11	송동면신평리	1907-1도	37.6	37.6	남원시	-
12	송동면신평리	1907-2도	245.9	245.9	남원시	-
13	송동면신평리	1908-1도	14.9	14.9	남원시	-
14	송동면신평리	1908-2도	363.9	363.9	남원시	-
15	송동면신평리	1909-1도	473.8	473.8	남원시	-
16	송동면신평리	1910-1도	198.3	198.3	남원시	-
17	송동면신평리	1911-1도	388.5	388.5	남원시	-
18	송동면신평리	1912-1답	48.2	48.2	남원시	-
19	송동면신평리	1912-2도	192.1	192.1	국유지(국토교통부)	-
20	송동면신평리	1912-3도	774.7	774.7	남원시	-

연번	지역	지번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21	송동면신평리	1917-1도	674.7	674.7	국유지(국토교통부)	-
22	송동면신평리	1917-2도	56.7	56.7	남원시	-
23	송동면신평리	1918도	1399.1	1399.1	국유지(국토교통부)	-
24	송동면신평리	1919도	828.0	828.0	국유지(국토교통부)	-
25	송동면신평리	1923-5도	35.8	35.8	남원시	-
26	송동면신평리	1924-1답	87.9	87.9	국유지(국토교통부)	-
27	송동면신평리	1925-1답	251.5	251.5	남원시	-
28	송동면신평리	2059-2도	193.2	193.2	남원시	-
29	송동면신평리	2059도	1537.1	62.0	남원시	-
30	송동면신평리	2060구	489.5	489.5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
31	송동면신평리	2061-1도	54.6	54.6	국유지(국토교통부)	-
32	송동면신평리	2061구	804.2	30.6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
33	송동면신평리	2062-1도	73.4	73.4	국유지(국토교통부)	-
34	송동면신평리	412-1도	76.0	76.0	남원시	-
35	송동면신평리	412-23도	128.0	128.0	남원시	-
36	송동면신평리	416-1도	122.0	122.0	남원시	-
37	송동면신평리	416-2도	3.0	3.0	남원시	-
38	송동면신평리	417-1도	214.0	214.0	남원시	-
39	송동면신평리	417-2도	380.0	326.4	김창희	임실면성가리283
40	송동면신평리	417-3도	89.0	89.0	남원시	-
41	송동면신평리	417-5답	247.0	247.0	남원시	-
42	송동면신평리	419-1답	281.0	281.0	남원시	-
43	송동면신평리	419-2도	33.0	33.0	남원시	-
44	송동면신평리	422-1도	133.0	133.0	남원시	-
45	송동면신평리	422-2도	36.0	36.0	남원시	-
46	송동면신평리	422-4도	9.0	9.0	남원시	-
47	송동면신평리	423-1도	123.0	123.0	남원시	-
48	송동면신평리	423-2도	36.0	36.0	남원시	-
49	송동면신평리	424-1도	212.0	212.0	남원시	-
50	송동면신평리	424-2도	78.0	78.0	정산민호	흑송리120
51	송동면신평리	426-1도	5.0	5.0	남원시	-
52	송동면장국리	1037-2답	2284.0	2284.0	남원시	-
53	송동면장국리	1038-1천	40.0	40.0	곽중근외1인	826
54	송동면장국리	1050-1전	33.0	33.0	남원시	-
55	송동면장국리	1050-2전	76.0	76.0	남원시	-
56	송동면장국리	1094-1도	7.0	7.0	남원시	-
57	송동면장국리	1101-109제	5251.0	416.0	국유지(국토교통부)	-
58	송동면장국리	1101-110잡	11528.0	6096.0	전라북도	-
59	송동면장국리	1101-127전	261.0	261.0	남원시	-
60	송동면장국리	1101-129구	95.0	95.0	국유지(국토교통부)	-
61	송동면장국리	1101-130도	2681.0	1411.1	국유지(국토교통부)	-

연번	지역	지번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62	송동면장국리	1101-132답	163.0	163.0	남원시	-
63	송동면장국리	1101-138구	598.0	54.3	국유지(국토교통부)	-
64	송동면장국리	1101-141전	317.0	317.0	남원시	-
65	송동면장국리	1101-143구	126.0	94.3	국유지(국토교통부)	-
66	송동면장국리	1101-144도	4522.0	1847.5	국유지(국토교통부)	-
67	송동면장국리	1101-148도	289.0	289.0	남원시	-
68	송동면장국리	1101-167도	974.0	779.5	남원시	-
69	송동면장국리	1101-170도	268.0	268.0	남원시	-
70	송동면장국리	1101-171도	152.0	152.0	남원시	-
71	송동면장국리	1101-172도	121.0	121.0	남원시	-
72	송동면장국리	1101-173도	899.0	899.0	남원시	-
73	송동면장국리	1101-174도	34.0	34.0	남원시	-
74	송동면장국리	1101-175도	183.0	183.0	남원시	-
75	송동면장국리	1101-176도	101.0	101.0	남원시	-
76	송동면장국리	1101-177도	373.0	373.0	남원시	-
77	송동면장국리	1101-178도	27.0	27.0	남원시	-
78	송동면장국리	1101-179도	496.0	496.0	남원시	-
79	송동면장국리	1101-180도	478.0	478.0	남원시	-
80	송동면장국리	1101-181도	850.0	850.0	남원시	-
81	송동면장국리	1101-182도	338.0	338.0	남원시	-
82	송동면장국리	1101-183도	58.0	58.0	남원시	-
83	송동면장국리	1101-184도	292.0	292.0	남원시	-
84	송동면장국리	1101-185도	635.0	635.0	남원시	-
85	송동면장국리	1101-186도	245.0	245.0	남원시	-
86	송동면장국리	1101-187도	371.0	371.0	남원시	-
87	송동면장국리	1101-188도	426.0	426.0	남원시	-
88	송동면장국리	1101-189도	144.0	144.0	남원시	-
89	송동면장국리	1101-201잡	439.0	439.0	남원시	-
90	송동면장국리	1101-204계	592.0	55.5	국유지(국토교통부)	-
91	송동면장국리	1101-205계	18777.0	6931.1	국유지(국토교통부)	-
92	송동면장국리	1101-222구	111.0	37.9	국유지(국토교통부)	-
93	송동면장국리	1101-233도	43.0	43.0	국유지(국토교통부)	-
94	송동면장국리	1101-234구	10.0	10.0	국유지(국토교통부)	-
95	송동면장국리	1101-235도	168.0	168.0	국유지(국토교통부)	-
96	송동면장국리	1101-236도	65.0	65.0	남원시	-
97	송동면장국리	1101-237도	141.0	141.0	남원시	-
98	송동면장국리	1101-238도	59.0	59.0	남원시	-
99	송동면장국리	1101-240답	1861.0	1861.0	남원시	-
100	송동면장국리	1101-241답	575.0	575.0	남원시	-
101	송동면장국리	1101-242답	1239.0	1239.0	남원시	-
102	송동면장국리	1101-243전	42.0	42.0	남원시	-

연번	지역	지번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103	송동면장국리	1101-244답	203.0	203.0	남원시	-
104	송동면장국리	1101-245답	648.0	648.0	남원시	-
105	송동면장국리	1101-246답	836.0	836.0	남원시	-
106	송동면장국리	1101-247전	663.0	663.0	남원시	-
107	송동면장국리	1101-248대	249.0	249.0	남원시	-
108	송동면장국리	1101-249전	525.0	525.0	남원시	-
109	송동면장국리	1101-250답	226.0	226.0	남원시	-
110	송동면장국리	1101-251잡	823.0	823.0	박영석	남원시금동406-34
111	송동면장국리	1101-252잡	1241.0	1241.0	남원시	-
112	송동면장국리	1101-253잡	408.0	408.0	남원시	-
113	송동면장국리	1101-254답	969.0	969.0	남원시	-
114	송동면장국리	1101-255답	1362.0	1362.0	남원시	-
115	송동면장국리	1101-256전	461.0	461.0	남원시	-
116	송동면장국리	1101-257답	49.0	49.0	남원시	-
117	송동면장국리	1107-12계	714.0	94.6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
118	송동면장국리	1107-13구	154.0	154.0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
119	송동면장국리	1107구	9601.0	339.1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
120	송동면장국리	1122-1도	72.0	9.6	국유지(국토교통부)	-
121	송동면장국리	1122-2도	8.0	8.0	국유지(국토교통부)	-
122	송동면장국리	1122도	524.0	248.5	국유지(국토교통부)	-
123	송동면장국리	1142도	1484.0	352.0	국유지(국토교통부)	-
124	송동면장국리	1198도	3386.0	733.5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
125	송동면장국리	1201구	1958.4	33.9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
126	송동면장국리	477-24답	43.0	23.4	국유지(국토교통부)	-
127	송동면장국리	478-2도	33.0	33.0	남원시	-
128	송동면장국리	478-4도	59.0	59.0	남원시	-
129	송동면장국리	478-5답	230.0	230.0	남원시	-
130	송동면장국리	478-7답	218.0	150.4	허정규외1인	장국리350
131	송동면장국리	490-2도	93.0	93.0	남원시	-
132	송동면장국리	490-3도	86.0	86.0	남원시	-
133	송동면장국리	490-6도	400.0	400.0	남원시	-
134	송동면장국리	490-8답	390.0	390.0	남원시	-
135	송동면장국리	491-1천	535.0	306.3	국유지(국토교통부)	-
136	송동면장국리	491-2도	89.0	89.0	남원시	-
137	송동면장국리	491-3도	4.0	4.0	국유지(국토교통부)	-
138	송동면장국리	492-2도	145.0	145.0	남원시	-
139	송동면장국리	492-3도	3.0	3.0	남원시	-
140	송동면장국리	492-4도	82.0	82.0	국유지(국토교통부)	-
141	송동면장국리	493-12도	16.0	16.0	남원시	-
142	송동면장국리	493-1답	1311.0	1311.0	남원시	-
143	송동면장국리	493-2도	112.0	112.0	남원시	-

연번	지역	지번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144	송동면장국리	493-3도	192.0	192.0	남원시	-
145	송동면장국리	493-4도	79.0	16.7	국유지(국토교통부)	-
146	송동면장국리	493-5전	60.0	60.0	진판기	남원읍조산리190
147	송동면장국리	493-7도	209.0	209.0	남원시	-
148	송동면장국리	494-1답	43.0	43.0	남원시	-
149	송동면장국리	496-2도	195.0	195.0	남원시	-
150	송동면장국리	496-5도	45.0	45.0	남원시	-
151	송동면장국리	496-6답	1338.0	1338.0	남원시	-
152	송동면장국리	497-10전	30.0	30.0	남원시	-
153	송동면장국리	500-3답	14.0	14.0	남원시	-
154	송동면장국리	860-2천	3.0	3.0	양은묵	남원면 쌍교리
155	송동면장국리	860-6답	195.0	195.0	남원시	-
156	송동면장국리	861전	241.0	241.0	남원시	-
157	송동면장국리	919-4답	10.0	10.0	곽경환	857
158	송동면장국리	921-2답	434.0	434.0	남원시	-
159	송동면장포리	553-3도	89.0	89.0	남원시송동면	-
160	송동면흑송리	298도	201.0	201.0	남원시	-
161	송동면흑송리	299도	211.0	211.0	남원시의외1인	-
162	송동면흑송리	302도	308.0	308.0	남원시	-
163	송동면흑송리	305도	257.0	257.0	남원시	-
164	송동면흑송리	307-1도	38.0	38.0	조덕순	송동면흑송리544
165	송동면흑송리	308도	22.0	22.0	남원시	-
166	송동면흑송리	309도	316.0	316.0	남원시	-
167	송동면흑송리	310-1도	72.0	72.0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
168	송동면흑송리	310유	3034.0	10.0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
169	송동면흑송리	385-1도	221.0	221.0	남원시	-
170	송동면흑송리	385-2도	416.0	416.0	남원시	-
171	송동면흑송리	386-1도	666.0	666.0	남원시	-
172	송동면흑송리	386답	246.0	246.0	서선산	아영면일대리251
173	송동면흑송리	387-5도	24.0	24.0	남원시	-
174	송동면흑송리	387-6답	12.0	12.0	박돈규	373-1
175	송동면흑송리	387-7답	19.0	19.0	박돈규	373-1
176	송동면흑송리	390-1도	125.0	125.0	남원시	-
177	송동면흑송리	390-2도	184.0	184.0	남원시	-
178	송동면흑송리	391-3도	3.0	3.0	남원시	-
179	송동면흑송리	391-4도	117.0	117.0	남원시	-
180	송동면흑송리	391-5도	333.0	333.0	남원시	-
181	송동면흑송리	391-6도	671.0	671.0	남원시	-
182	송동면흑송리	393-1도	96.0	96.0	남원시	-
183	송동면흑송리	393-2도	3.0	3.0	남원시	-
184	송동면흑송리	394-1도	83.0	83.0	남원시	-

연번	지역	지번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185	송동면흑송리	394-2도	10.0	10.0	서선산	아영면일대리251
186	송동면흑송리	395-1도	109.0	109.0	남원시	-
187	송동면흑송리	395-2도	69.0	69.0	남원시	-
188	송동면흑송리	396-1도	30.0	30.0	최자성여최소사	-
189	송동면흑송리	397-2도	228.0	228.0	남원시	-
190	송동면흑송리	398-2도	7.0	7.0	양기선	대산면 운교리
191	송동면흑송리	398-3도	65.0	65.0	남원시	-
192	송동면흑송리	399-2도	53.0	53.0	남원시	-
193	송동면흑송리	399-3도	23.0	23.0	남원시	-
194	송동면흑송리	399-4도	119.0	119.0	남원시	-
195	송동면흑송리	400-2도	63.0	63.0	남원시	-
196	송동면흑송리	400-3도	17.0	17.0	남원시	-
197	송동면흑송리	400-4도	161.0	161.0	남원시	-
198	송동면흑송리	401-1도	40.0	40.0	남원시	-
199	송동면흑송리	401-3도	17.0	17.0	남원시	-
200	송동면흑송리	401-4도	185.0	185.0	남원시	-
201	송동면흑송리	401-5도	713.0	713.0	남원시	-
202	송동면흑송리	401-6도	232.0	232.0	남원시	-
203	송동면흑송리	402-1도	14.0	14.0	남원시	-
204	송동면흑송리	402-2전	123.0	123.0	양영환	42
205	송동면흑송리	403-1도	50.0	50.0	남원시	-
206	송동면흑송리	403-2도	84.0	84.0	남원시	-
207	송동면흑송리	404-2도	73.0	73.0	남원시	-
208	송동면흑송리	404-3도	10.0	10.0	남원시	-
209	송동면흑송리	404-4도	19.0	19.0	남원시	-
210	송동면흑송리	404-6도	101.0	101.0	남원시	-
211	송동면흑송리	404-7도	2.0	2.0	남원시	-
212	송동면흑송리	413-2도	241.0	241.0	남원시	-
213	송동면흑송리	413-3도	152.0	79.1	남원시	-
214	송동면흑송리	413-4도	71.0	71.0	남원시	-
215	송동면흑송리	413-6도	1402.0	1402.0	남원시	-
216	송동면흑송리	414-1도	266.0	266.0	남원시	-
217	송동면흑송리	415-2도	23.0	23.0	남원시	-
218	송동면흑송리	415-5도	423.0	423.0	남원시	-
219	송동면흑송리	416-1답	179.0	133.0	남원시	-
220	송동면흑송리	416-3도	215.0	16.0	남원시	-
221	송동면흑송리	416-4도	1336.0	1336.0	남원시	-
222	송동면흑송리	417-3도	142.0	125.0	남원군송동면	-
223	송동면흑송리	417-6도	72.0	72.0	남원시	-
224	송동면흑송리	417-7도	52.0	52.0	남원시	-
225	송동면흑송리	433-2도	13.0	13.0	김석진	송동면안산리374

연번	지역	지번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226	송동면흑송리	433-3도	60.0	60.0	남원시	-
227	송동면흑송리	433-5도	1651.0	1651.0	남원시	-
228	송동면흑송리	433-6답	226.0	226.0	김석진	송동면안산리374
229	송동면흑송리	433-8도	266.0	266.0	남원시	-
230	송동면흑송리	435-2도	63.0	2.0	남양방씨종중	주생면지당리429
231	송동면흑송리	435-4도	13.0	13.0	남원시	-
232	송동면흑송리	435-5도	10.0	10.0	남원시	-
233	송동면흑송리	437-1도	61.0	61.0	남원시	-
234	송동면흑송리	438-2도	188.0	96.0	남원시	-
235	송동면흑송리	438-3도	1427.0	1427.0	남원시	-
236	송동면흑송리	438-5도	557.0	557.0	남원시	-
237	송동면흑송리	439-1도	24.0	24.0	남원시	-
238	송동면흑송리	458-4도	1.0	1.0	남원시	-
239	송동면흑송리	458-6도	55.0	55.0	남원시	-
240	송동면흑송리	460-7답	3.0	3.0	곽종선의2인	서울시송파구신청동17시영아파트92-402
241	송동면흑송리	460-8도	39.0	39.0	남원시	-
242	송동면흑송리	461-1도	658.0	658.0	남원시	-
243	송동면흑송리	461-3도	54.0	54.0	남원시	-
244	송동면흑송리	461-8도	610.0	610.0	남원시	-
245	송동면흑송리	462-1도	441.0	441.0	남원시	-
246	송동면흑송리	462-3도	40.0	40.0	남원시	-
247	송동면흑송리	463-3도	482.0	482.0	남원시	-
248	송동면흑송리	463-5도	343.0	343.0	남원시	-
249	송동면흑송리	463-7도	114.0	114.0	남원시	-
250	송동면흑송리	463-8답	174.0	174.0	박병섭외3인	116
251	송동면흑송리	464-1도	10.0	10.0	남원시	-
252	송동면흑송리	464-2도	4.0	4.0	이춘호	서울시중랑구망우동178-18
253	송동면흑송리	466-2도	48.0	48.0	남원시	-
254	송동면흑송리	466-3도	50.0	50.0	남원시	-
255	송동면흑송리	467-10도	19.0	19.0	남원시	-
256	송동면흑송리	467-1천	449.0	49.0	국유지(국토교통부)	-
257	송동면흑송리	467-2도	1585.0	1585.0	남원시	-
258	송동면흑송리	467-3도	246.0	246.0	남원시	-
259	송동면흑송리	467-4도	161.0	161.0	남원시	-
260	송동면흑송리	467-7도	28.0	28.0	남원시	-
261	송동면흑송리	467-8도	6.0	6.0	남원시	-
262	송동면흑송리	467-9도	39.0	39.0	남원시	-

연번	지역	지번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263	송동면흑송리	690-1구	760.0	131.4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
264	송동면흑송리	690-2구	3919.0	1151.0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
265	송동면흑송리	690-3구	400.0	14.1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
266	송동면흑송리	690구	1723.0	849.4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
267	송동면흑송리	705-3도	502.0	502.0	국유지(국토교통부)	-
268	송동면흑송리	705도	6279.0	2881.0	국유지(국토교통부)	-
269	송동면흑송리	706-4구	46.0	46.0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
270	송동면흑송리	706구	1421.0	1005.0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
271	송동면흑송리	709-64제	2244.0	112.4	국유지(국토교통부)	-
272	송동면흑송리	760-1도	56.0	56.0	남원시	-
273	송동면흑송리	761-1도	77.7	77.7	남원시	-
274	송동면흑송리	762-1도	292.2	292.2	남원시	-
275	송동면흑송리	763-1도	2.2	2.2	남원시	-
276	송동면흑송리	763-2도	398.3	398.3	남원시	-
277	송동면흑송리	764-1도	69.0	69.0	남원시	-
278	송동면흑송리	764-2도	424.7	424.7	남원시	-
279	송동면흑송리	765-1도	48.6	48.6	남원시	-
280	송동면흑송리	765-2도	186.9	186.9	남원시	-
281	송동면흑송리	766-1도	40.5	40.5	남원시	-
282	송동면흑송리	766-2도	222.2	222.2	남원시	-
283	송동면흑송리	767-1도	17.4	17.4	남원시	-
284	송동면흑송리	767-2도	274.1	274.1	남원시	-
285	송동면흑송리	768-1도	236.4	236.4	남원시	-
286	송동면흑송리	769-1도	514.6	514.6	남원시	-
287	송동면흑송리	770-1도	548.6	548.6	남원시	-
288	송동면흑송리	771-1도	130.2	130.2	남원시	-
289	송동면흑송리	771-2도	429.0	429.0	남원시	-
290	송동면흑송리	772-1도	254.9	254.9	남원시	-
291	송동면흑송리	772-2도	362.8	362.8	남원시	-
292	송동면흑송리	773-1도	101.1	101.1	남원시	-
293	송동면흑송리	773-2도	289.9	289.9	남원시	-
294	송동면흑송리	775-1도	5.4	5.4	남원시	-
295	송동면흑송리	776-1도	6.5	6.5	남원시	-
296	송동면흑송리	861구	3807.8	37.0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
297	송동면흑송리	862도	1453.3	1453.3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
298	송동면흑송리	863구	899.3	859.9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
299	송동면흑송리	864구	1137.4	5.2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
300	송동면흑송리	865도	1596.3	11.2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
301	송동면흑송리	산27-3도	64.0	64.0	남원시	-
302	송동면흑송리	산27-4임	1194.0	20.9	송공숙	145
303	송동면흑송리	산27-6도	42.0	42.0	남원시	-

연번	지역	지번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304	송동면흑송리	산28-1도	669.0	669.0	남원시	-
305	송동면흑송리	산28-2임	181.0	181.0	남원시	-
306	송동면흑송리	산34-3도	708.0	708.0	남원시	-
307	송동면흑송리	산34-4도	65.0	65.0	남원시	-
308	송동면흑송리	산34-6도	1491.0	1309.8	남원시	-
309	송동면흑송리	산34-7도	36.0	36.0	남원시	-
310	송동면흑송리	산35-2도	56.0	56.0	남원시	-
311	송동면흑송리	산37-3도	169.0	169.0	남원시	-
312	송동면흑송리	산37-4임	596.0	596.0	남원시	-
313	송동면흑송리	산38-3도	48.0	22.8	남원시	-
314	송동면흑송리	산56-1도	339.0	339.0	남원시	-
합 계			168,711.3	99,421		

□ 10호선 총괄표

구분	계		국유지		남원시		사유지	
	필지수	면적(m ²)						
합계	5	3,309	1	257	4	3,052	-	-
도	5	3,309	1	257	4	3,052	-	-

□ 10호선 세부토지조서

연번	지역	지번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1	사매면월평리	산55-9도	1,335	1,335	남원시	-
2	사매면월평리	764-1도	992	992	남원시	-
3	사매면월평리	765-4도	664	664	남원시	-
4	사매면월평리	765-3도	61	61	남원시	-
5	사매면월평리	913도	2,569	257	국유지(국토교통부)	-
합 계			5,621	3,309		

□ 13호선 총괄표

구분	계		국유지		남원시		전라북도		사유지	
	필지수	면적(m ²)	필지수	면적(m ²)	필지수	면적(m ²)	필지수	면적(m ²)	필지수	면적(m ²)
합계	67	21,448	8	2,284	53	18,202	1	273	5	689
구	4	556	3	514	-	-	-	-	1	42
도	60	20,341	5	1,770	53	18,202	1	273	1	96
임	2	528	-	-	-	-	-	-	2	528
전	1	23	-	-	-	-	-	-	1	23

□ 13호선 세부토지조서

연번	지역	지번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1	송동면송기리	산71-9도	252	252	남원시	
2	송동면송기리	산71-10도	99	99	남원시	-
3	송동면송기리	산71-5도	3,943	273	전라북도	-
4	송동면송기리	산71-8도	1,652	1,652	남원시	-
5	송동면신평리	1665도	2,763	121	국유지(국토교통부)	-
6	송동면신평리	1670도	350	350	국유지(국토교통부)	-
7	송동면신평리	1674도	44	44	국유지(국토교통부)	-
8	송동면신평리	186-2도	17	17	남원시	-
9	송동면신평리	186-4도	56	56	남원시	-
10	송동면신평리	190도	162	162	남원시	-
11	송동면신평리	190-1도	13	13	남원시	-
12	송동면신평리	191도	493	493	남원시	-
13	송동면신평리	191-1도	13	13	남원시	-
14	송동면신평리	192-1도	23	1	국유지(국토교통부)	-
15	송동면신평리	192-3도	204	204	남원시	-
16	송동면신평리	2108-5도	220	220	남원시	-
17	송동면신평리	2109-5도	146	146	남원시	-
18	송동면신평리	2109-6도	329	329	남원시	-
19	송동면신평리	2109-7도	71	71	남원시	-
20	송동면신평리	2110-1도	460	460	남원시	-
21	송동면신평리	2129-1구	115	115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
22	송동면신평리	2129-2구	284	284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
23	송동면신평리	2130구	115	115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
24	송동면신평리	2131도	1,347	1,254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
25	송동면신평리	771-3도	110	110	남원시	-
26	송동면신평리	771-4도	263	263	남원시	-
27	송동면신평리	772-4도	69	69	남원시	-
28	송동면신평리	772-5도	169	169	남원시	-

연번	지역	지번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29	송동면신평리	773-5도	336	336	남원시	-
30	송동면신평리	773-6도	20	20	남원시	-
31	송동면신평리	777-3도	135	135	남원시	-
32	송동면신평리	777-4도	23	23	남원시	-
33	송동면신평리	787-2도	76	76	남원시	-
34	송동면신평리	788-1도	99	99	남원시	-
35	송동면신평리	788-3도	381	381	남원시	-
36	송동면신평리	789-2도	86	86	남원시	-
37	송동면신평리	789-3도	256	256	남원시	-
38	송동면신평리	790-2도	172	172	남원시	-
39	송동면신평리	790-3도	33	33	남원시	-
40	송동면신평리	790-4도	280	280	남원시	-
41	송동면신평리	791-1도	96	96	조진규	송기리 294
42	송동면신평리	791-3도	364	364	남원시	-
43	송동면신평리	792-1전	23	23	조진규	송기리 294
44	송동면신평리	792-3도	156	156	남원시	-
45	송동면신평리	793-1도	20	20	남원시	-
46	송동면신평리	793-3도	115	115	남원시	-
47	송동면신평리	863-12도	13	13	남원시	-
48	송동면신평리	863-13도	32	32	남원시	-
49	송동면신평리	863-14도	181	181	남원시	-
50	송동면신평리	863-15도	339	339	남원시	-
51	송동면신평리	863-16구	42	42	양명수	남원읍 금리 86
52	송동면신평리	95-1도	508	508	남원시	-
53	송동면신평리	산100-4도	234	234	남원시	-
54	송동면신평리	산100-5도	26	26	남원시	-
55	송동면신평리	산100-6도	676	676	남원시	-
56	송동면신평리	산101-1도	1,949	1,949	남원시	-
57	송동면신평리	산68-6도	160	160	남원시	-
58	송동면신평리	산68-7도	81	81	남원시	-
59	송동면신평리	산69-6도	1,057	1,057	남원시	-
60	송동면신평리	산69-7도	368	368	남원시	-
61	송동면신평리	산69-8도	295	295	남원시	-
62	송동면신평리	산70-4도	37	37	남원시	-
63	송동면신평리	산72-1임	69	69	김세균외1인	964-1
64	송동면신평리	산91-12도	720	720	남원시	-
65	송동면신평리	산93-4임	459	459	김세균외1인	964-1
66	송동면신평리	산94-1도	645	645	남원시	-
67	송동면신평리	산96-8도	3,531	3,531	남원시	-
합 계			27,875	21,448		

남원시 고시 제2016 - 58호

남원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남원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5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남 원 시 장
2016. 4. 15.

1. 사업의 종류 : 남원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사업명	시설명	위 치	사업규모	시행청	비고
남원예촌조성사업(1지구)	문화 시설	남원시 고샘길 56일원	11,079m ²	남원시 (문화관광과)	변경결정일 남원시 고시 제2015-112호 (2015.12.30.)
남원예촌조성사업(2지구)		남원시 금하정2길 89-11일원	6,913m ²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남원시장(문화관광과)
 - 나. 주 소 : 남원시 시청로 60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남원예촌조성사업(1지구) : (당초) 실시계획인가일부터 ~ 2015. 12. 31
(변경) 실시계획인가일부터 ~ 2016. 6. 30
 - 남원예촌조성사업(2지구) : 실시계획인가일부터 ~ 2016. 12월
5.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 : 실음생략
6.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 지장물 조서 : 따로붙임
7. 관계도서 : 실음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공사명 : 남원예촌 조성사업(2지구)

연번	건물소재지		지목	건 축 물							비고	
	시·동	지번		물건종류	구조 및 규격	건축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명세
합			계				-		-	-	-	
1	남원시 쌍교동	137	대	주택 및 법당(1층)	세멘/벽돌 1층	72.36	남원시 고샘길 80 (쌍교동)	유창열				
2	"	"	대	주택(2층)	세멘/벽돌 2층	72.36	남원시 고샘길 80 (쌍교동)	유창열				
3	"	"	대	까데기	목조/슬레 트	29.47	남원시 고샘길 80 (쌍교동)	유창열				
4	"	"	대	욕실	블럭/슬레 트	2.89	남원시 고샘길 80 (쌍교동)	유창열				
5	"	"	대	대문	철재	4.4	남원시 고샘길 80 (쌍교동)	유창열				
6	"	"	대	화장실 1층	-	1식	남원시 고샘길 80 (쌍교동)	유창열				
7	"	"	대	보일러실 2층	-	1식	남원시 고샘길 80 (쌍교동)	유창열				
8	"	"	대	옥탑창고	브릭스라브 (2*2)	1식	남원시 고샘길 80 (쌍교동)	유창열				

남원시 고시 제2016 - 59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6년 04월 15일

남 원 시 장

- 1. 사 업 명 : 개간사업
- 2. 사업목적 :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소득증대 기여
- 3. 사 업 비 : 자력사업
- 4. 사업내용
 - 가. 위 치 :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산109-1번지
 - 나. 사 업 량 : 4,950m²
 - 다. 사업기간 : 2016. 04. ~ 2017. 03. 31
 - 라. 사업시행자 : 남원시 송동면 해대길 **, 김 **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농정과 농촌개발(620-639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16- 505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공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16년 4월 15일

남 원 시 장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될 범위 등

지구명	위치	지정내용				관리자	지정 사유	비고
		유형	등급	연장(m)	높이(m)			
팔랑지구	전북 남원시 산내면 내령리 산64-1번지 일원	붕괴위험	D	500	5~10	남원시장	붕괴위험지역 정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2.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단,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관리기관(안전재난과)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

하여 사전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 붕괴위험지역 중장기 계획에 반영 보수·보강 추진

4. 의견수렴기간 : 2016. 4. 15(금) ~ 5. 04(수) 20일간

5. 공고방법 : 남원시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사무소 게시판

6. 관련근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6. 의견제출 :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원시청 안전재난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편 : (우)590-701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남원시청 안전재난과)

· 전화 : 063) 620-6964 · 팩스 : 063) 620-6747

붙임 1.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부.

2. 편입토지조서 1부.

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

편입토지조사서

일련 번호	위치	지정개요				지정사유	소유자	비 고
		면적(m ²)		유형	등급			
		지적 면적	지정 면적					
1	남원시 산내면 내령리 산64-1	581	200	붕괴위험	D	사면붕괴위험	남원군	
2	남원시 산내면 내령리 산57-5	1,245	390	붕괴위험	D	사면붕괴위험	윤태*	
3	남원시 산내면 내령리 산57-4	168	35	붕괴위험	D	사면붕괴위험	윤태*	
4	남원시 산내면 내령리 산141	446	446	붕괴위험	D	사면붕괴위험	국)건설부	
5	남원시 산내면 내령리 산66-1	661	661	붕괴위험	D	사면붕괴위험	남원군	
6	남원시 산내면 내령리 산66	3,158	450	붕괴위험	D	사면붕괴위험	최석*	
7	남원시 산내면 내령리 산57-7	774	250	붕괴위험	D	사면붕괴위험	윤태*	
8	남원시 산내면 내령리 산57-6	2,019	390	붕괴위험	D	사면붕괴위험	윤태*	
9	남원시 산내면 내령리 산69-1	9,124	400	붕괴위험	D	사면붕괴위험	장혜*	
10	남원시 산내면 내령리 산69-6	893	125	붕괴위험	D	사면붕괴위험	남원군	
11	남원시 산내면 내령리 산69-7	584	165	붕괴위험	D	사면붕괴위험	남원군	
12	남원시 산내면 내령리 산69-2	17,961	695	붕괴위험	D	사면붕괴위험	배재*	
13	남원시 산내면 내령리 349	233	150	붕괴위험	D	사면붕괴위험	최석*	
14	남원시 산내면 내령리 산69-3	23,405	300	붕괴위험	D	사면붕괴위험	강일*	
15	남원시 산내면 내령리 산57-10	167	167	붕괴위험	D	사면붕괴위험	최종*	
16	남원시 산내면 내령리 산57-12	873	335	붕괴위험	D	사면붕괴위험	장혜*	
17	남원시 산내면 내령리 산52	531,880	226	붕괴위험	D	사면붕괴위험	정기*	
18	남원시 산내면 내령리 750	340	115	붕괴위험	D	사면붕괴위험	국)건설부	

□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치도(팔랑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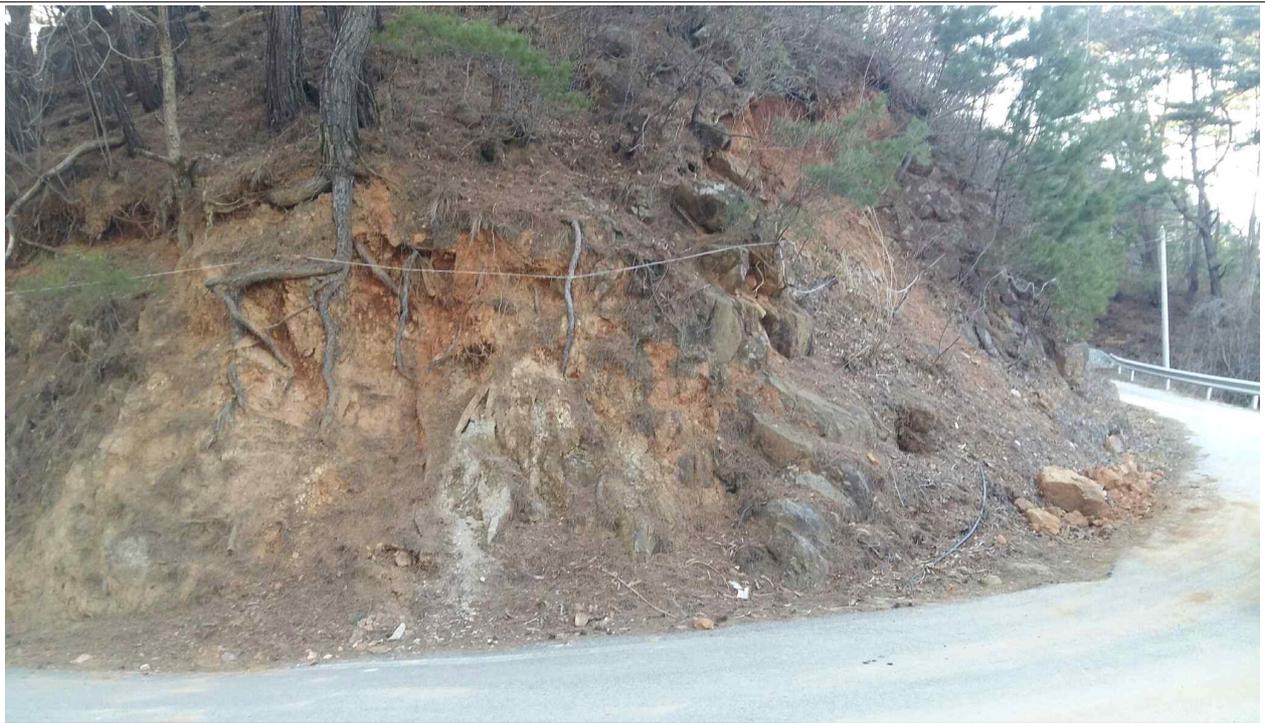
현황 사진



현 황 사 진



현 황 사 진



남원시 공고 제 호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확정 시행 공고

전라북도 남원시 월락동 일원에서 시행된 남원 월락동 풍산누리안아파트 신축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규정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확정·시행함을 공고합니다.

- 1. 사업명 : 남원 월락동 풍산누리안아파트 신축공사
- 2. 시행일 : 2016. 4. 12.
- 3. 공고기간 : 2016. 4. 12. ~ 4. 26.
- 4.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풍산건설
- 5. 지적공부 폐쇄 및 확정내역

종전토지 지적공부(폐쇄)			확정토지 지적공부(시행)			비 고
소재지	필지	면적(m ²)	소재지	필지	면적(m ²)	
월락동	13	10,680	월락동	1	10,657	지번별조서 참고

- 6. 열람 및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민원과 지적계 (☎063-620-61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4. 12.

남 원 시 장

남원시 공고 제2016-539호

남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환경부고시 제2015-245호, 2015.12.29.)』 규정에 따라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작성된 남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5일

남 원 시 장

붙임 남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부. 끝.

남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2016. 4.



- 목 차 -

1. 목 적 1

2. 평가기준 1

3. 평가방법 1

4. 참여평가자 1

5. 용역사업 수행실적 2

6. 입찰참가 자격제한, 업무정지 및 부실벌점 3

7. 재정상태 건실도 3

8. 개발실적, 투자실적 및 활용실적 4

9. 업무여유도 4

10. 공동도급 5

11.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5

12. 계약질서위반에 대한 벌칙 6

13. 심사결과의 통보 6

14. 기타사항 6

 <별표 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7

 <별표 2> 환경분야별 기술자격 인정범위 13

 <별표 3> 참여의향서 평가기준 14

 <별표 3-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가중치 15

 <별표 4>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 인정범위 16

 <별표 5> 신용평가 등급의 기준 17

15. 작성안내서 18

1. 목 적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3(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기준)에 따라 『남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선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평가기준

2.1.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

2.2.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제출안내 공고일 현재로 하며, 평가항목별 해당기간의 평가 자료에 의거 평가한다.

2.3.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감점을 합산한 점수로 한다.

2.4. 비율, 평점 등의 계산결과 소수점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다만, 상대평가를 위한 순위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까지 평가할 수 있다.

3. 평가방법

3.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로 한다.

3.2.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실적 등이 없는 경우에 평가는 최하점으로 한다.

3.3. 평가항목별 평가방법에 의한 평점이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4. 참여기술자

4.1. 참여평가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제출안내 공고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고용되어 현재 재직 중인 자만 인정한다.

4.1.1. 참여평가자에 대한 평가는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으로 한다.

4.2. 평가대상 참여평가자는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불가피한 사유(이직 등)로 발주기관과 협의 시 변경할 수 있다].

4.3.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은 자격취득 시기나 자격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환경 분야의 용역수행 경력 및 실적으로 평가한다.

4.4. 장기계속 용역인 경우, 최종 준공되어야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한다(단,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장기계약인 경우, 1차년도 이상 준공되면 1건).

4.5. 참여평가자의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 포함),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적에 한한다(단,

환경보전방안의 검토는 제외).

4.5.1. 참여평가자 실적의 평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

4.5.2.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의 인정범위는 <별표4>와 같다.

4.6. 참여평가자가 발주기관·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용역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4.7. 참여평가자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은 해당 경력관리수탁기관 등의 증명에 의하여 인정하며,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의 증명 등에 의하여 인정한다.

4.8. 교육훈련 평가는 참여평가자가 최근 3년간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4.9. 과업의 이해도 평가는 관련 평가자의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4.9.1. 전(前)단계 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말한다.

4.9.2. 전단계 용역의 실적은 발주청이 발행한 실적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실적을 인정

4.9.3. 전단계용역의 평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

4.10. 참여평가자의 이적계수는 공고일 기준 이적에 따라 해당평가자별 총 점수에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4.10.1.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경우, 이적 전(前) 직장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무직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10.2. 이적계수의 평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

5. 용역사업 수행실적

5.1. 참여업체의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사전 환경성검토 포함),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적에 한한다(단, 환경보전방안의 검토는 제외).

5.2. 용역사업 수행실적은 준공된 용역 또는 발주기관이 확인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한하며,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3. 해외평가 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5.3.1. 해외평가 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4.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5.5. 공동도급에 의한 실적 중 건수 및 금액은 지분율로 인정한다.

- 5.6. 장기계속 용역인 경우, 최종 준공되어야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한다(단,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장기계약인 경우 1차년도 이상 준공되면 1건).
- 5.7. 용역을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계약한 경우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용역수행실적으로 인정한다.
- 5.8.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의 인정범위는 <별표4>와 같다.
- 5.9. 업체능력평가는 대표사의 참여의향서에 대해 평가한다.
 - 5.9.1. 참여의향서의 평가기준은 <별표3>과 같다.

6. 입찰참가 자격제한, 업무정지 및 부실벌점

- 6.1.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3] 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0.2점/월, 거짓작성 및 복제 3점/건, 부실작성 2점/건씩 각각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6.2. 평가업체 및 평가자가 타 법령에 의해 최근 1년간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6.3. 점수계산방법은 참여업체 및 참여평가자의 누계 벌점에 따라 감점

7. 재정상태 건설도

- 7.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별표5)할 수 있다.
- 7.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
- 7.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7.4.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8. 개발실적, 투자실적 및 활용실적

- 8.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

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8.2 투자실적 평가

8.2.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8.2.2.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8.2.3. 해당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 실적 제출

8.3 활용실적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8.3.1. 용역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어야 한다).

8.3.2.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만료 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 내에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 시점)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8.3.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동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8.3.4.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9. 업무여유도

9.1.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공고일 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모든 용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중복금액으로 평가한다.

9.2. 업무여유도의 평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

※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이 중지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분야별 업무여유도의 최저 점수는 “0점”으로 한다.

9.3. 제출된 평가서상의 수행중인 용역사업 현황이 우리 시에서 별도로 조회한 결과와 확인하여 평가 자료의 내용이 누락 및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평가자의 항목에 대하여 “0점” 처리한다.

10. 공동도급

10.1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한다.

10.2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종 사항 평가시 각각 참여사의 실적에 참여비율을 적용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10.3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PQ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한다.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10.4. 공동도급에 대한 평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에만 가점 인정

11.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11.1. <별표1>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사업수행능력(PQ) 평가 결과 88.89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11.2. 11.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 ①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를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자료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 ③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1.3.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이후 입찰집행 시까지 11.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12. 계약질서 위반에 대한 벌칙

12.1.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제출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우리 시가 집행한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제11조 11.2항 제②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된 자는 1회 발생건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종합평점에서 1점씩 감점한다. 이 경우 감점 점수는 2점을 초과할 수 없다.

13. 심사결과의 통보

13.1. 입찰참가자격자를 선정 한 경우에는 그 적격여부를 해당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3.2. 13.1의 규정에 의한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심사관련서류와 평가점수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이때 평가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일로부터 3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4. 기타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한다.

<별표 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I.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사항	배점	평가방법	
계			[100]		
1.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1)자격 및 등급	가. 총괄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다. 분야별 평가자	[14] 3 6 5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2)경력	가. 총괄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다. 분야별 평가자	[17] 4 7 6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3)실적	가. 총괄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17] 4 7 6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4)업무여유도	가. 총괄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17] 4 7 6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5)교육훈련		[1]	절대평가	
	(6)과업의 이해도		[1]	절대평가	
	(7)환경평가발전(평가자)		[1]	절대평가	
	(8)이적계수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1)실적	가. 건수 나. 금액	[14] 7 7	절대평가 절대평가
		(2)신용도	가.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나. 재정상태 건실도	[8] 5 3	절대평가 절대평가
(3)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실적 나. 투자실적 다. 활용실적	[6] 2 2 2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4)환경평가발전			[2]	절대평가	
(5)능력평가			[2]	상대평가	
(6)하도급준수					

1. 참여자 능력평가

1) 자격 및 등급(14점)

구분	환경영향평가사	해당기술사	특급기술사	고급기술사	중급기술사	초급기술사
총괄	3.00점	2.85점	2.70점	-	-	-
분야별 책임평가자	-	6.00점	6.00점	5.40점	4.80점	-
분야별 평가자	-	5.00점	5.00점	5.00점	5.00점	4.50점

※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사 및 “건설기술자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함

※ 참여평가자의 기술자격 분야별 인정범위(별표2 참조) 및 평가 인원수

- 총괄 : 환경분야 1인
- 분야별 책임평가자 : 자연생태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각 1명
- 분야별 평가자 : 자연생태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각 1명

※ 배점은 평가자 구분에 따른 총점/분야별 인원

2) 환경영향평가 등 경력(17점)

구분	경력년수					
	15년이상	13년이상	10년이상	9년이상	7년이상	7년미만
총괄	4.00점	3.60점	3.20점	2.80점	2.40점	2.00점
분야별 책임평가자	7.00점	7.00점	6.30점	5.60점	4.90점	4.20점
분야별 평가자	6.00점	6.00점	6.00점	6.00점	5.40점	4.80점

※ 경력은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환경분야 전체경력으로 평가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사후환경영향조사는 100%, 기타 환경분야는 60% 인정

3) 환경영향평가 등 실적(17점)

구분	실적건수			
	13건이상	11건이상	9건이상	9건미만
총괄	4.00점	3.60점	3.20점	2.80점
분야별 책임평가자	7.00점	6.30점	5.60점	4.90점
분야별 참여평가자	6.00점	6.00점	6.00점	5.40점

※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준공한 용역(별표.4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 인정범위 참조)으로 평가한다.

※ 실적 1건에 대한 실적계수 적용

구분	유사사업	기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0.6건	0.36건
환경영향평가	1.0건	0.6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0.6건	0.36건
사후환경영향조사	1.0건	0.6건

○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의 인정범위는 <별표 4> 참조

※ 참여한 평가자가 공공기관에서 평가서 협의, 검토, 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실무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

4) 업무여유도(17점)

- ①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공고일기준 최대1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등의 중복금액으로 평가
 - ② 1인당 중복금액 : [건당 계약금액×(공고일기준 향후 1년이내의 잔여개월수/총계약기간)/10인] 의 합계
 - ③ 평가자별 업무여유도 점수 : 배점 - [배점×(1인당 중복금액 2.5억 초과금액/2.5억)]
- ※ 3개월 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 및 협의 완료된 사업은 제외
 ※ 분야별 업무여유도의 최저 점수는“0점”으로 함

5) 교육훈련(1점)

구분	배점
2주 이상 교육 이수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 이수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 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교육훈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교육,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교육, 환경영향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타 법령에 의한 환경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6) 과업의 이해도(1점)

- ① 본 용역의 전(前)단계용역(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평가인수에 따라 평가
 - ② 점수 = 전단계 참여인원중 금회 참여한 인원수/금회 총평가인원수
- ※ 전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인원은 전단계 용역에 총 과업기간의 1/2이상 참여자에 한함

7) 환경평가발전(평가자)(1점) : 해당사항 없음

※ 본 항목은 별도의 평가기준 마련 시까지 만점 부여

8) 이적계수

구분	3개월미만	3개월이상~6개월미만	6개월이상
이적계수	0.8	0.9	1.0

※ 공고일 기준 최근 이적한 경우에 해당평가자별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
 ※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경우, 이적 전(前) 직장 5년 이상 근속한 경우, 이적 전(前) 무직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제외

2. 평가업체 능력평가

1)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14점)

※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준공한 용역(별표.4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 인정범위 참조)으로 평가한다.

① 건수(7점)

실적건수				
10건이상	8건이상	6건이상	4건이상	4건미만
7.00점	6.30점	5.60점	4.90점	4.20점

② 금액(7점)

실적금액(본 용역 발주금액대비)				
300%이상	200%이상	100%이상	50%이상	50%미만
7.00점	6.30점	5.60점	4.90점	4.20점

※ 건수 및 금액에 대한 실적계수 적용

구분	유사사업	기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0.6	0.36
환경영향평가	1.0	0.6
소규모환경영향평가	0.6	0.36
사후환경영향조사	1.0	0.6

-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 인정범위는 <별표 4> 참조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

2) 신용도(8점)

①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5점)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3] 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0.2점/월, 거짓작성 및 복제 3점/건, 부실작성 2점/건씩 각각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평가업체 및 평가자가 타 법령에 의해 최근 1년간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점수계산은 참여업자 및 참여평가자의 누계 별점에 따라 감점

② 재정상태 건실도(3점)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대기업/중기업	3.00	2.70	2.40	2.10	0
	소기업	3.00	3.00	2.70	2.40	0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6점)

① 개발실적(2점) : 환경분야 100%, 기타분야 60% 적용

- 산출식 = 건당 1.0 × 등급별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등급별 가중치

구분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적용	1.0	0.6	0.3	0.1

※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함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구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적용	특허	1.0	0.8	0.6
	실용신안	1.0	0.8	-

② 투자실적(2점)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 산출식 : 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

구분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점수	2.0	1.8	1.6	1.4	1.2

③ 활용실적(2점) : 환경분야 100%, 기타분야 60% 적용

- 산출식 = 건당 1.0×활용건수 및 금액 가중치×등급별 가중치×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따른 가중치

활용건수(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적용	1.0	0.9	0.8	0.7	0.6

※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등급별 가중치

구분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적용	1.0	0.6	0.3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구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1.0	0.8	0.6

4) 환경평가발전(2점)

① 환경영향평가 우수업체(1점)

- 우수평가업체에 대해 배점한도 내에서 누계점수를 부여한다.
- 환경평가 우수업체(최근 5년) : 0.2점/건
- ※ 본 항목은 시행 후 별도의 평가기준 마련 시까지 만점 부여

② 공동도급(1점)

○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 경우 : 0.5
- 제1종업체↔소기업(1, 2종 포함) 공동도급 : 0.5

※ 한 업체가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경우는 제외하며, 1종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 중·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5) 업체능력평가(2점)

본 용역 참여 대표사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 기술능력 평가기준

구분	수	우	미	양	가
점수	1.0	0.9	0.8	0.7	0.6

※ 대표사의 기술능력(용역수행상 주안점, 용역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에 따라 평가 <별표3 참조>

※ 기술능력 평가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

구분	수	우	미	양	가
점수	1.0	0.9	0.8	0.7	0.6

※ 대표사의 업무관리능력(해당 용역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따라 평가 <별표3 참조>

※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6) 하도급 준수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별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최종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에서 감점한다.

※ 공동도급의 경우 지분율을 적용하여 감점

<별표 2> 환경분야별 기술자격 인정범위

분 야 별	등 급 평 가	경력 및 실적평가
	해 당 분 야	해당분야
1. 총괄	환경 분야	환경영향평가등
2. 분야별 책임평가자	자연생태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각1인	환경영향평가등
3. 분야별 평가자	자연생태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각1인	환경영향평가등

※ 분야별기술자는 자연생태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분야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기준' 을 고려하여 참여해야 한다.

<별표 3> 참여의향서 평가기준

구분	배점	지 표
수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력과 관련한 우리시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우리시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	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력과 관련한 우리시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우리시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 사항을 제시한 답변
미	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력과 관련한 우리시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 우리시 요구사항에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양	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력과 관련한 우리시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 우리시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	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력과 관련한 우리시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 우리시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별표 3-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 중 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별표 4>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 인정범위

구분	유사사업	기타사업
기술자 실적	산업단지(농공단지) 환경영향평가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산업단지(농공단지)를 제외한 모든 환경영향평가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회사 실적	산업단지(농공단지) 환경영향평가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산업단지(농공단지)를 제외한 모든 환경영향평가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 참여업체의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참여평가자의 경우 10년간)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 포함),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단, 환경보전방안의 검토는 제외)에 한한다.

<별표 5> 신용평가 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안내서

1. 목 적

본 안내서는 우리시에서 시행할 『남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우수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본 안내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용역명 : 『남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3. 용역개요

가.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남원시

나.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1)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월평리 일원
- 2) 과 업 내 용

가) 과업면적 : $A = 776,473\text{m}^2$

나) 기 타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7개월

라. 용역금액 : 659,1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속비 사업으로 총액계약 대상임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 크 기 : A4(210mm × 297mm)
-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한국어 작성)
- 지 질 : 백상지, 표지는 백색아트지
- 표 지 : 첨부 양식과 동일하게 작성
- 제본방법 : 무선철(좌철)
- 작성내용 및 방법 :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참조

5.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평가 참가신청 공문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 사본 1)
 - 참여의향서 5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登記부등본 1부(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사용 시), 해당업 신고증·등록증 및 수첩사본 1부
 - 기타 참가자격등록증 사본
 - 공동도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 참여시) 원본 1부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참가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16. 4.00. 09:00 ~ 18:00
 - 제출장소 : 남원시 안전경제건설국 도시과 (전화 : 063-620-6468)
- ※ 우편, 팩스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6. 작성시 유의사항

- 가.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나.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상의 참여건설기술자는 계약 후 임의교체 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자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라. 제출된 평가서 내용의 착오나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제·해지 등 우리 시에서 임의 조치합니다.
-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 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우리 시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 바. 평가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1.1.1. 사. 원본 대조필이나 신청업체에서 사용한 인장은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 1.1.2. 아. 증빙서류가 없는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미진한 자료

이거나 신빙성이 없고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시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1.1.3. 자. 공동참여 회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1인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고, 대표회사는 참여지분율이 높고, 사업책임기술자가 소속된 회사이어야 합니다.
- 1.1.4. 차. 평가서는 붙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에 의거 좌단 편철하여 각 항목별로 색간지를 삽입하여 구분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항목별 견출지를 부착하여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5. 카. 서류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편철순서

- 1. 참가신청서
- 2. 목 차
- 3. 참여기술자 현황
 - 가. 참여자 조직표(양식1)
 - 나. 참여자 총괄표(양식2)
 - 다. 참여자의 개인별 자격, 경력 및 실적(양식3)
 - 라. 업무여유도(양식4)
 - 마. 교육훈련 / 과업의 이해도(양식5)
- 4. 유사용역 수행실적
 -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양식6)
- 5. 신 용 도
 - 가.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부실벌점(양식7)
 - 나. 재정상태건실도(양식8)
-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가. 개발실적(양식9)
 - 나. 투자실적(양식10)
 - 다. 활용실적(양식11)
- 7. 환경영향평가발전(양식12)
- 8. 업체능력평가(양식13)
- 9. 자기평가서(양식14)

[표지]



남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2016. ○○.

업 체 명

참 가 신 청 서

본인은 귀 시에서 발주하는 『남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에 참여코자 불임과 같이 사업수행 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허위 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과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 해지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포함)

2016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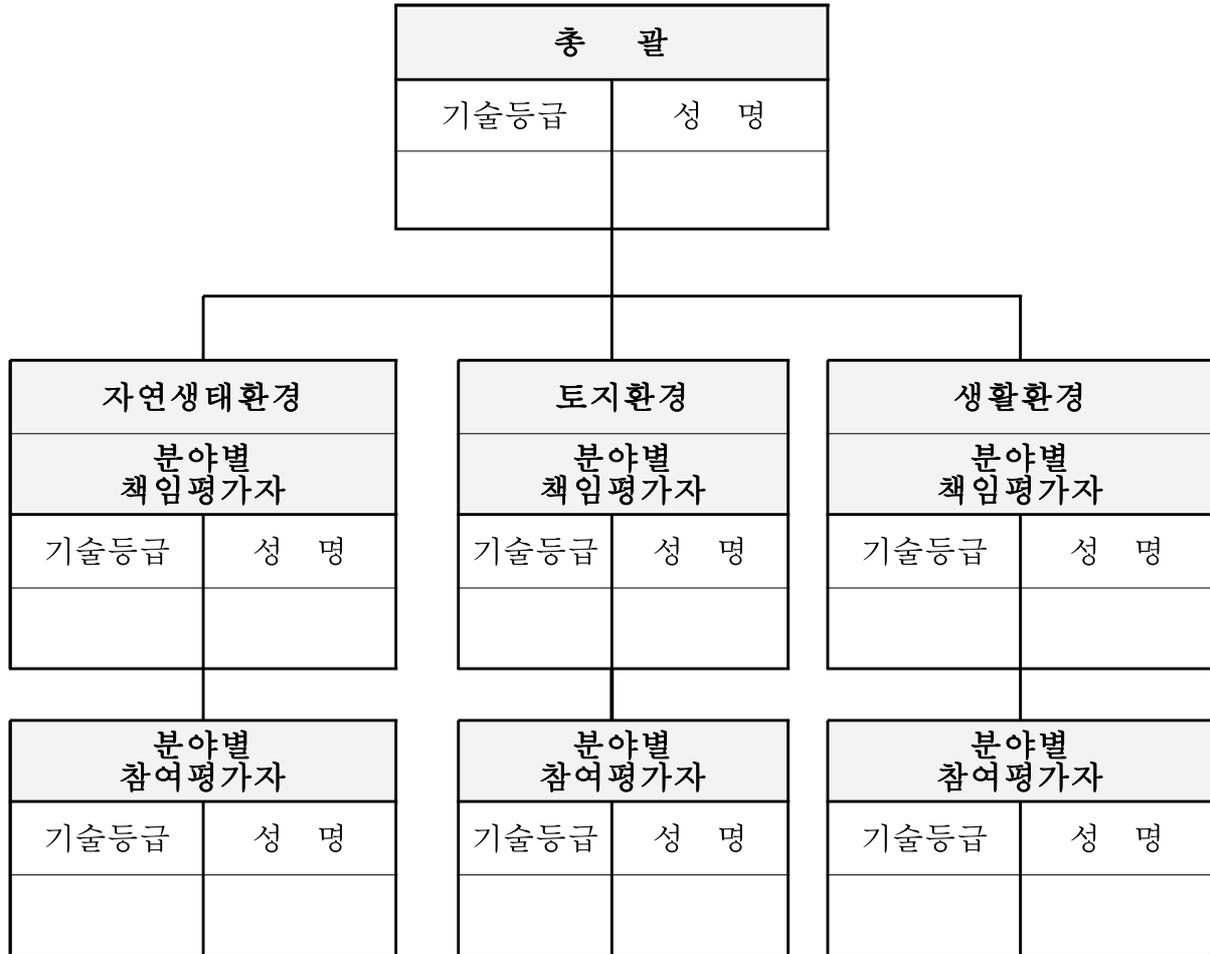
대 표 회 사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공동참여회사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남원시장 귀하

(양식 1)

참여자 조직표



- 주) 1. 총괄은 대표회사 소속 평가자로 하며,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 참여평가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2. 분야별 책임평가자와 참여평가자 또한 중복되지 않게 배치하여야 한다.
3. 공동도급의 경우에 대해서는 공동이행계획(공동도급 비율)에 따라 1인 이상을 포함하여 배치하여야 한다(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한다).

(양식 2)

참여자 총괄표

구 분	성 명	본과업 참여 직 위	기술자 등 급	자 격 증		환경분야 경력 (년월)	실적 (건수)
				종 류	취득일		
총괄							
분 야 별 책임평가자							
자연생태 환경분야							
토지환경 분야							
생활환경 분야							
분 야 별 참여평가자							
자연생태 환경분야							
토지환경 분야							
생활환경 분야							

- 주) 1. (양식 1)에 포함된 기술자에 대하여 작성한다.
 2. 근무경력은 사업수행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3. 기술자등급및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의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다.
 4. 참여기술자 해당 실적은 (양식3)의 나. 참여기술자 해당실적의 합계건수와 동일하게 작성한다.

(양식 3)

참여자의 개인별 자격 및 경력, 해당분야 실적

가. 자격 및 경력

성명		소속		직위		자격증	종류 : 취득일 : 등록번호 :	환경분야총 분야경력	
주민등록 번호		최종학교(학위)			전 공			해당평가 분야경력	년 월
○ 경 력 사 항									
근 무 기 간	개월수(0년0월)				근 무 처			직 위	담 당 업 무

나. 해당분야 실적

용역명	준공금액(백만원)		용역기간 (년월일 -년월일)	참여기간 (년월일 -년월일)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처	비 고
	전체금액	지분금액					소속	직위		
※예 : 총용역비 6억이고, 자기회사의 지분이 50%인 경우										
000 용역	600	300	10.01.01 ~ 10.12.31 (365일)	10.06.01 ~ 10.12.31 (214일)	0.59	환경 영향 평가	(주)00	이사	0 0시 (군)	※공동도급 (주)00:50% (주)00:50%
계										

- 주) 1. 참여기간은 반드시 연월일까지 기재한다(미기재시 인정치 아니함).
 2. 경력사항 및 실적사항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조

(양식 4)

업무여유도

분야	성명	용역명	발주처	총용역 금액(원) (A)	총용역 기간(일) (B)	잔여 기간(일) (C)	중복률 (D) (C/B)	1인당 중복 금액 (A*D/10)	비고
총괄	소계								
	000	0000							
분야 책임 평가 자1	소계								
	000	0000							

- 주) 1. 당해용역 평가대상자가 다른 환경영향평가등(사후포함)에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참여한 경우에 중복기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2. 허위 기재 시 우리 시에서 임의 처리함.
3. 분야 란에는 조직표상의 평가자 순으로 작성.
4.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하고, 최저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기재 가능하고,“최저점 적용”을 표시함.
5. 기타 설명
- 총용역금액 : 지분율을 고려하지 않은 총 계약금액
 - 총용역기간 : 계약서상의 총계약기간
 - 잔여기간 : 공고일 기준 향후 1년 이내의 과업기간(1년을 초과하는 경우 365일 적용)
 - 중복률 : 총 계약기간에 대한 잔여기간의 비율
 - 1인당 중복금액 : (중복률 × 총계약금액) / 10

(양식 5)

교육훈련

구 분 (참여분야)	성 명	교 육 기 관	교 육 명	교 육 기 간 (년월~년월)	비 고

- 주) 1. 참여건설기술자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증빙서류 첨부)
 2.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을 작성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과업의 이해도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성 명	공고일 현재 재직여부	비 고

주) 용역현황 관리기관(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의 확인을 필하고, 실적 증명서 및 참여기술자 명단 첨부

(양식 6)

유사용역 수행실적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준공금액(백만원)		발주처	책임기술자	지분건수	비고
			전체금액	지분금액				
※예 : 총용역비 6억인 용역이고, 자기회사의 지분이 50%인 경우								
0000 용역		년월일~ 년월일	600	300	00시	홍길동	0.5	※공동도급 (주)00:50% (주)00:50%
계								

※ 자세한 사항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조

(양식 7)

신용도

가. 입찰참가 제한기간(부정당업자 지정) 및 업무정지

1. 업 체

최근 1년간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	제 한 기 관	제 한 근 거	제 한 기 간	비 고
유 :				
무 :				

2. 참여기술자

분 야	성 명	관련사업명	제 한 근 거	제 한 기 간	비 고

- 주) 1.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영업 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또는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기재한다.
 2. 해당사항이 없는 회사는“해당사항 없음”표시
 3. 기간은 년. 월. 일~년. 월. 일(○○개월)로 기재한다.

나. 부실벌점

구 분	회사명 또는 참여기술자명	부실벌점	내 용	부여기관	비 고
용역업자					
참여기술자					

- 주) 1.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자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관련내용을 기재
 2. 관련협회 확인서 첨부

(양식 8)

나. 재정상태 건실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 용	비 고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본 사 주 소		
<input type="checkbox"/> 신용평가		
신 용 평 가 종 류		
신 용 평 가 등 급		
재 무 결 산 기 준 일		
등 급 평 가 일		
유 효 기 간		
신 용 평 가 기 관		

- 주) 1.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작성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한다.

(양식 9)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가. 개발실적

구분	건명	기술내용	최초 출원일	출원일 이후 경과기간 (%)	최초출원인	적용 점수	비고
신기술							
	소계						
특허							
	소계						
실용신안							
	소계						
계							

- 주) 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고, 설계등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사 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기술평가확정등록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건에 한하여 설계등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작성
2. 자체개발 실적에 한하여 작성하고,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실적 없음”으로 기재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증빙서류 첨부(신기술등록증, 특허청등록원부, 최초출원인확인서 등), 미첨부시 제외
5.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10)

나. 투자실적

년 도	기술개발 투자실적 (백만원)	건설부문 총매출액 (백만원)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총 매출액에 대한 비율(%)	비 고
합 계				
평 균				

주) 1. 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등) 및 건설부문 총매출액(손익계산서 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득한 증빙자료 첨부

※ 기술개발투자실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상의 공제세액 대상금액만 인정

2.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실적 없음”을 기재

3. 공동참여 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11)

다. 활용실적

구 분	건 명	유효기간	경과기간		활용건수		활용금액 (억)		적용 요건	적용 점수
			기간	가중 치	건수	가중치	금액	가중치		
신 기술										
특 허										
실용신안										
계										()점

주) 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을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양식 12)

환경평가발전

환경영향평가 우수업체

일련번호	우수업체사례	평가기관	비고

※ 본 항목은 시행 후 별도의 평가기준 마련 시까지 만점 부여

(양식 13)

업체능력평가

용역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2016. 〇〇.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처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 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용역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
(책임기술자가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양식 14)

자 기 평 가 서

□ 업체명 : (주)00000(00%), (주)00000(00%)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평가 전체집계	점수	비고
참 여 기 술 자 (68)	총괄 (15)	등 급	절대 평가	3		
		경 력		4		
		실 적		4		
		업무 여유도		4		
	분 야 별 책임평가자 (27)	등 급	절대 평가	6		
		경 력		7		
		실 적		7		
		업무 여유도		7		
	분 야 별 참여기술자 (23)	등 급	절대 평가	5		
		경 력		6		
		실 적		6		
		업무 여유도		6		
	교육훈련 (1)	교육훈련	절대 평가	1		
	과업의 이해도 (1)	전차용역	절대 평가	1		
환경평가 발전(평가 자) (1)	환경평가 발전	절대 평가	1		1 만점부여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평가 전체집계	점수	비고
환경영향 평가등 수행실적 (14)	회사실적 (14)	수행건수	절대 평가	7			
		수행금액	절대 평가	7			
신 용 도 (8)	부실평가자 및부실업체 등 (5)	행정처분	절대 평가	5			
	재정상태 진실도 (3)	신용평가 등급	절대 평가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6)	개발실적 (2)		절대 평가	2			
	투자실적 (2)		절대 평가	2			
	활용실적 (2)		절대 평가	2			
환경평가 발전(2)	우수업체		절대 평가	1		1	만점부여
	공동도급		절대 평가	1			
업체능력 평가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		상대 평가	2	점수 기재하지 않음	0	별도평가
합 계				100			

※ 자기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